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9월 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무역안보과 이태휘 과장(044-203-4050), 방규철 사무관(044-203-4051)

전략기술 해당 가능성, 쉽고 간단히 확인하세요!

-『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』 개통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「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」을 개통함.

○ **전략기술**이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·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**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***로서,

* 공작기계 제조 기술,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기술 등 총 1,400여 개

○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**정부의 허가***를 받아야 함.

*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최대 징역 5년, 거래액 3배 벌금 [illegible]

□ 기업과 연구기관은 논문 등 **기술자료를 시스템에 전송(upload)**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음.

○ 그동안에는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**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***을 일일이 확인했어야 함.

* 전략기술은 "전략물자수출입고시" 별표2 또는 3에 규정

□ 『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』 개통으로 기술개발 현장에서 전략기술 **확인부담이 대폭 경감**되고, **불법이전도 사전에 예방**될 것으로 기대함.

○ 전략기술「매치율」이 높다고 판별된 경우 전략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**사전판정을 신청**하고,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**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전**해야 함.

<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 시스템 개요 >



□ 산업부는 『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』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[illegible]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**교육과 지원을 확대**할 계획임.

○ 국가 연구개발(**R&D**) **과제 관련자, 주요 학회 회원, 연구기관 종사자** 등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교육*을 실시하고 있으며,

* 연구지원 전문가 양성과정(산기평, 매주 50여 명), 학회 정기학술대회 강연(금속재료학회 등 13개), 기업부설 연구소 순회교육(부산, 창원 등 8개 지역) 등

○ 특히, 연구자들의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**자율준수체제(CP) 시범사업***, 분야별 **전략기술 안내책자** 제작을 진행함.

* 대학 등 연구기관 내 규정, 절차, 조직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AIST, 서울대, 울산과기대 등에 시범사업 진행 중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방규철 사무관(☎ 044-203-40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전략기술 관리제도 개요

□ **(전략기술 개념) 대량살상무기(WMD)와 재래식무기** 및 이들 무기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 가능한 **산업용물품(전략물자)과 관련된 기술**

○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(우리나라 모두 가입)는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해외 이전 시 **허가를 통하여 관리**할 것을 규정

<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>

핵무기	생·화학무기	미사일	재래식무기
NSG ('78)	AG ('85)	MTCR ('87)	WA ('96)
47개 회원국	41개 회원국	34개 회원국	41개 회원국

□ **(지정현황)** '전략물자수출입고시' 별표 2(이중용도품목) 및 별표 3(군용품목)에 고시되어 있으며, **통제번호 기준으로 1,405개 기술**

○ 자동화기, 무인항공기 등 무기관련 기술 외에 탄소섬유 제조기술, 반도체 제조장비 운용기술 등 **일반 산업용 기술이 다수 차지**

□ **(허가대상)**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,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, **이전방법 및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** 필요

< 허가대상 기술이전의 범위 >

이전 대상	▪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 ▪ 국내 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이전
이전 방법	▪ 전화·팩스·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▪ 교육, 훈련, 실연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한 이전 ▪ 종이, 필름, 자기디스크, 광디스크,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 또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이전

□ **불법수출 시 처벌**

○ **(사법처벌) 5년 이하 징역** 또는 거래가액 **3배 이내 벌금**

* 전략물자 확산 목적 시에는 **7년 이하 징역** 또는 5배 이내 **벌금**

○ **(행정처벌) 3년 이내**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

참고2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이용절차

매치율 간단 확인

1. Yestrade(www.yestarde.go.kr) 접속 후, 매치율 시스템 메뉴 클릭



2. 연구자료 업로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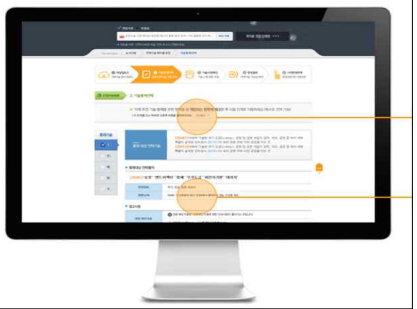


3. 전략기술 통제번호 및 매치율 산출



전략기술 정밀 판정

(1.~3. 절차 진행 후) 4. 관련성 있는 전략기술 선택



5. 기술사양 확인 응답(Y/N)



6. 최종 매치율 산출

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